

「위안화바로지급송금」상품설명서

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「외환거래기본약관 제3조 외화송금」약관이 적용됩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■ 상품명 : 위안화바로지급송금

■ 상품특징 : 미달러로 송금 시 중국 내 공상은행 지점에서 송금 당시 확인한 USD/CNY 환율로 송금액을 CNY로 환전, 별도 환전 절차 없이 중국 현지 수취인의 계좌에 CNY로 직접 입금되는 서비스

2 거래 조건

☞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입니다.

구분	내용												
이용대상	당행에 계좌를 개설한 개인고객												
수취인	중국국적의 개인												
거래통화	- 송금통화 : USD - 수취통화 : CNY												
적용환율	송금시점에 은행이 고시하는 전신환 매도율(송금 보내실 때)과 중국 내 공상은행이 통지하는 USD/CNY 환율												
송금한도 (송금인)	- 거주자의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(01) : 연간 미화 10만불 이내 -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소득 송금 (08) : 연간 미화 5만불 이내												
수수료	<table><thead><tr><th>구분</th><th>창구거래 시</th><th>인터넷뱅킹거래 시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송금수수료</td><td>송금금액의 0.1% (최저 8,000원 ~ 최고 25,000원)</td><td>송금금액의 0.06% (최저 5,000원 ~ 최고 12,000원)</td></tr><tr><td>전신료</td><td>8,000원</td><td>7,000원</td></tr><tr><td>중계은행수수료</td><td colspan="2">SHA(송금인/수취인 쌍방부담) * ICBC Shanghai Branch 수수료: 수취은행이 타행인 경우 20위안을 송금금액에서 차감 후 입금</td></tr></tbody></table>	구분	창구거래 시	인터넷뱅킹거래 시	송금수수료	송금금액의 0.1% (최저 8,000원 ~ 최고 25,000원)	송금금액의 0.06% (최저 5,000원 ~ 최고 12,000원)	전신료	8,000원	7,000원	중계은행수수료	SHA(송금인/수취인 쌍방부담) * ICBC Shanghai Branch 수수료: 수취은행이 타행인 경우 20위안을 송금금액에서 차감 후 입금	
	구분	창구거래 시	인터넷뱅킹거래 시										
	송금수수료	송금금액의 0.1% (최저 8,000원 ~ 최고 25,000원)	송금금액의 0.06% (최저 5,000원 ~ 최고 12,000원)										
	전신료	8,000원	7,000원										
중계은행수수료	SHA(송금인/수취인 쌍방부담) * ICBC Shanghai Branch 수수료: 수취은행이 타행인 경우 20위안을 송금금액에서 차감 후 입금												

3 유의 사항

-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른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합니다.
- 중국 내 수취인의 연간 외환업무한도 미화 5만불 초과 시 송금은 자동 되결됩니다.
- 동일자 동일인 기준 건당 미화 1만 달러 초과시 국세청 자동 통보 됩니다.

- 송금인과 수취인은 송금인 본인이 수취인인 경우 외에 배우자, 형제자매 등 생활비 목적의 지급이 가능한 관계여야 합니다. 송금목적 및 수취인과의 관계 확인 등 수취은행에서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송금은 퇴결될 수 있습니다.
- 송금 퇴결 시 기지급한 수수료(송금 수수료, 전신료, 중계수수료)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 송금 퇴결로 인해 발생하는 환차손은 고객 본인이 부담합니다.
- 수취인 신분증번호와 이름이 불일치할 경우 송금은 즉시 퇴결됩니다.
- 수취인 계좌정보 불일치 등 기타 사유로 즉시 지급할 수 없어 서울지점이 수정요청을 수신한 경우, 고객은 이에 대해 1회에 한해 수정가능합니다.

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영업점(대표번호 02-755-5688 안내에 따라 각 지점 연결) 을 통해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